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56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 안호영·주철현·어기구

이춘석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이학영 · 박홍배 · 이용우

김주영·한병도·이원택

복기왕 · 김윤덕 · 윤준병

신영대 · 정동영 · 이성유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,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24 년부터 시행될 예정임.

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,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,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,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을 위한 조직·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.

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·산업 등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,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

략산업을 육성하고,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(조직, 재정 등)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, 지 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22조).
- 나.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(안 제24조의2 신설).
- 다.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 치도 내에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 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(안 제33조의2 신설).
- 라.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90조의3 신설).
- 마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2항(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
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 · 운영 기준,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(안 제99조의2 신설).

바.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 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 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(안 제116조의5 신 설).

법률 제 호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)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 ·지정 및 교육·훈련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·운영 및 지정·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제24조의3(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특례)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26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 - ⑥ 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① 「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 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 - ⑧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7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

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편제2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9조의2(지방의료원 지원 특례)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
-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제3편제2장제3절에 제30조의2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0조의2(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(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한정한다)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 이 경우 국가가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2조의2(신·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신에너

-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전북자치도 내에서 별도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 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 리 정할 수 있다.
- ③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5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 치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·공급한 전기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.
- 제32조의3(분산에너지 기준 특례)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2 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32조의4(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) ①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 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.
 - ② 도지사는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 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 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하 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

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3조의2(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)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 자치도 내에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 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,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3편제3장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8조의2(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 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3편제3장제2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9조의2(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특례) 「도시공원 및 녹지

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5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.

제57조제1항 중 "제12조"를 "제10조, 제12조"로, "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,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"을 "산지전용 · 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, 산지전용허가기준의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, 그 밖의 사업별·규모별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"제7조제2항"을 "제7조"로, "완충구역"을 "보호지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1조제1항제1호"를 "제11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따른 궤도의 건설 사업에 대한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1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
- ⑦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악관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.
- ⑧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악관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유림을 대부·매각·교환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2 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·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편제4장제1절에 제66조의2·제66조의3 및 제67조의2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6조의2(청년농업인 지원 특례) ①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3항에 따른 발전단계별로 자금,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·경영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66조의3(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 기 생활인구(이하 "전북자치도 생활인구"라 한다) 확대를 위하여 필

- 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·등 록할 수 있다.
- 1. 성명
- 2. 성별
- 3. 생년월일
- 4. 현재 주민등록지
- 5. 통근·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·체류하는 사유
- 6.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·학교 등에 관한 정보(소재지 등을 말하다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및 개인정보 수집·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 다.
-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다.
- ⑥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등록하도록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67조의2(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)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77조의2(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)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- 제4편제1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3조의2(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) ① 환경부장관은 「자연공원법」 제7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 인근지역(관할구역에 공원구역이 있는 읍·면·동 중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

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자연공원법」 제7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편제2장에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0조의2(외국인 정착 활성화)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·운 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0조의3(대중교통 활성화 촉진)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0조의4(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우선 지정 특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- 은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36조에 따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제90조의5(수도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수도법」 제17조제1 항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시자 의 권한으로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 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90조의6(조세의 감면)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 등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취득 세·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99조의2(자치조직권 특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2항(직급기 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- 1. 행정기구의 설치 · 운영 기준
 - 2.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
 - 3. 직속기관・사업소・출장소의 설치요건
 - ②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

정기구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00조의2(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) 「지방자 치법」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에 기준이 되 는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고, 그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.

제1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
제114조제1항 중 "제18조의3제2항,"을 "제18조의3제2항, 제19조제4항 (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한다),"로 한다.

제116조 중 "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"를 "위하여"로 한다.

제5편제3장에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6조의2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립 및 조성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- 제116조의3(지방세 특례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제1항, 같은 조제2항 단서, 제27조제1항제3호, 제83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「지방세법」 제19조제4호, 제30조제2항·제3항 및 제46조제1항 ·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- ③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제1항 단서, 같은 조 제6항,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- ④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제116조의4(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)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3항제1호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116조의5(지방교부세 특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

- 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세법」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	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
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	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
법률	법률
제22조(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	제22조(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
지원)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	지원)
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	
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	
하며,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	
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	
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	따른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
	관된 산업의 지원
<u> <신 설></u>	제22조의2(농촌융복합산업 제품
	판로지원사업 특례) 「농촌융
	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
	법률」 제23조제2항에도 불구
	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
	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
	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농생명산업 전문인력

양성기관 설치 등) ① 도지사 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 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 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의 설치・지정 및 교육・훈련 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 성기관 설치・운영 및 지정・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 례로 정한다.

제24조의3(농생명지구 내 외국인 근로자 파견 특례) 「파견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』제5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 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 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26조(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제26조(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

의 진흥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의 진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「보건의 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탄소소 재 의료기기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 여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전북자 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 - ⑤ 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 신의료기기 지원법」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,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⑦「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법률」 제9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

<신 설>

<신 설>

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 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
⑧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제 7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 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・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9조의2(지방의료원 지원 특례)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 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
- 2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역
- 제30조의2(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 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

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제24 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(전북 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한정한 다)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 로 한다. 이 경우 국가가 시범 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・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32조의2(신·재생에너지의 보 급사업 등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 치도 내에서 별도의 보급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 27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 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

다.

<신 설>

③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의5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·공급한 전기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 조의7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.

제32조의3(분산에너지 기준 특례)

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

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

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

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32조의4(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) ①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당 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.

② 도지사는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

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 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하수처 리시설을 설치하여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.

제33조의2(생명경제 자원순환실 증단지 조성 특례) ① 도지사 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 기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 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 종 시범사업, 연구개발 및 실증 <신<u>설></u>

<신 설>

제52조(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제52조(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) ① 산악관광진흥지구가 효과) ① ------지정 ·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

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 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

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

다.

제38조의2(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 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 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• 재정적 지워을 할 수 있다.

제49조의2(도시공원 점용허가 대 상에 관한 특례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 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호의 지정·수립·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·수립·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1. ~ 8. (생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제57조(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저 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례)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「산지관리법」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,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
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해
제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에 해
당하는 수변구역에 한정한다.
② (현행과 같음)
세57조(산악관광진흥지구 내
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
례) ①
제10조, 제1
<u> 2조</u>
<u>산지전용 · 일시사용제한지역</u>
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,
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
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
준, 그 밖의 사업별·규모별 세
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

② 사업시행자는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 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 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 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도지사는 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 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 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 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.

<신 설>

•
②
제7조
<u>보호지역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제13
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
따른 궤도의 건설 사업에 대한
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
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
정할 수 있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⑤</u>
제11조제1항
1. 「궤도운송법」 제2조에 따
른 궤도의 건설

<u>1.</u> ~ <u>3.</u> (생 략)

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 | <삭 제> 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 림으로서 「산림보호법」 제7 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, 경관보 호구역,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. ⑥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악관광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지 사와 협의하여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.

⑧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제20조 및 제21조 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 악관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 우 국유림을 대부 · 매각 · 교환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

<신 설>

물을 기부·철거하거나 원상회 복할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 물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66조의2(청년농업인 지원 특례)
①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은 도조례로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청년농업인에 대하 여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 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전 단계별로 자금, 컨설팅 또는 농 어업기술·경영교육 등의 지원 을 할 수 있다.

제66조의3(생활인구 등록 시범사 업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 (이하 "전북자치도 생활인구"라 한다)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

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·등록할 수 있다.

- <u>1. 성명</u>
- 2. 성별
- 3. 생년월일
- 4. 현재 주민등록지
- 5. 통근·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·체류하는 사유
- 6.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 · 학교 등에 관한 정보(소재지 등을 말한다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북자치도 생활인 구 등록 시범사업 및 개인정보 수집·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-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

<신 설>

부세법」 제6조에 따라 보통교 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북자치도 생활 인구를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 액을 산정할 수 있다.

⑥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 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등록하도 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7조의2(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)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 기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에 따른 평생교육 시범도시 에서 평생교육을 육성하기 위 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
제77조의2(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요청 등 특례) ① 「산업입지

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83조의2(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) ① 환경부장관은 「자연공원법」 제7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립공원인근지역(관할구역에 공원구역이 있는 읍·면·동 중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·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자연공원법」 제7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 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 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- 제90조의2(외국인 정착 활성화)
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
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
 런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 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·운 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 정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0조의3(대중교통 활성화 촉진)
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
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
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
 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0조의4(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우선 지정 특례)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36조에 따라 「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5에 따른 스마트그린산 업단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 다.

제90조의5(수도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수도법」 제1 7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시자의 권한으로 한다.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사

<신 설>

<u>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</u>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0조의6(조세의 감면) 산악관광 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「조세 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 한법」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인세·소득세·취득세·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99조의2(자치조직권 특례) ①
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2항
(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- 1. 행정기구의 설치・운영 기준
- 2.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
- 3.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의 설치요건
- ②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 하여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야 한다.

제112조(자율학교 운영의 특례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114조(초・중등교육에 관한 특 제114조(초・중등교육에 관한 특 례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4조제1항, 제13조제4항, 제14조 제2항, 제18조의2제4항, 제18조 의3제2항, 제27조제3항, 제30조 제3항, 제31조제3항, 제33조제2 항, 제34조, 제34조의2제4항, 제 43조제2항, 제47조제2항, 제60

제100조의2(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 비성 예산에 기준이 되는 총액 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고, 그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 소 속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 다. 제112조(자율학교 운영의 특례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 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 다.

례) ① -----

-----레18 조의3제2항, 제19조제4항(인구 감소지역에 한정한다),-----

조제3항, 제60조의2제3항, 제60 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3항·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략)

<신 설>

제116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116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	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)
	<u>위하여</u>

제116조의2(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 은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 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지매 립 및 조성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 치의 신속하고 원할한 추진을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「국가재정법」 제38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 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16조의3(지방세 특례) ① 「지 방세기본법」 제26조제1항, 같 은 조 제2항 단서, 제27조제1항 제3호, 제83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1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 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「지방세법」 제19조제4호,제30조제2항・제3항 및 제46조제1항・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세징수법」 제7조제1 항 및 제2항, 제11조제1항 단 서, 같은 조 제6항, 제26조제1 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 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④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 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

<신 설>

할 수 있다.

제116조의4(지방소비세 안분기준변경 특례)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1조제 3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6조의5(지방교부세 특례) ①
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부
세법」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
고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원
확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전
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
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
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
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
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
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
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
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지방교 부세법」 제8조의3제2항에 따

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
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
를 반영하는 항목 및 산정기준
을 정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
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
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정할
수 있다.